

지역 ·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훈련시설 · 장비 불용처리 매뉴얼

2020. 10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산업별지원국 지역지원부]

목 차

1. 배경 및 목적	1
2. 근거 규정	1
3. 기본 방침	1
4. 세부 운영계획	2
□ 훈련시설·장비 불용처리 요청	2
□ 전문가 사전검토 및 심의·의결	2
□ 훈련시설·장비 불용처리 승인 요청	3
□ 훈련시설·장비 점검 및 불용사유 검토	3
□ 훈련시설·장비 불용 승인 여부 알림	4
□ 훈련시설·장비 불용처리 결과 보고	4
5. 행정사항	4
【별첨】	
1. 불용처리 요청서(공동훈련센터용)	5
2. 전문가 사전검토 의견서	6
3. 불용처리 승인 요청서(지역인자위용)	7
4. 불용처리 결과 보고서(공동훈련센터용)	8

1 배경 및 목적

- 공동훈련센터의 사업수행 연차가 일정기간 경과함에 따라 고장·파손 등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에 활용이 어려운 훈련시설·장비가 지속 증가
- 실제 처리 사례가 없었던 훈련시설·장비 불용처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절차·양식 등을 일괄 안내

2 근거 규정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제61조(훈련시설 및 장비의 내용연수 등)

- ①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훈련시설 및 장비를 최종적으로 지원받은 해를 포함하여 6년 이상 지역·산업 맞춤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내용연수가 도래한 훈련시설로 교육훈련 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에 따라 내용연수가 도래한 훈련장비로 교육훈련 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3. 고장, 파손 등에 따른 수리비용이 해당 훈련시설 및 장비의 현재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4. 활용실적이 많아 장비가 마모되거나 기술변화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5. 제4항에 따른 훈련시설의 대체로 기존 지원 장비에 대한 사용이 불가한 경우(훈련장비만 해당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인자위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사전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훈련시설 및 장비의 불용처리 등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실시하는 회계정산을 할 때에 제66조에 따라 선정한 회계정산 수행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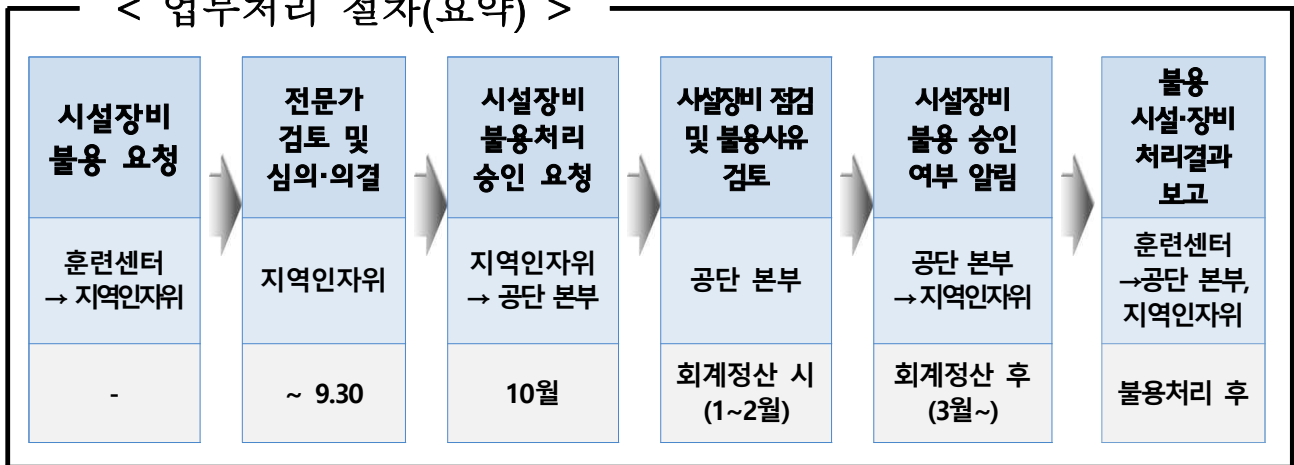
3 기본방침

- 교육훈련에 활용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운영규칙 제61조제1항)가 확인된 훈련시설·장비에 한하여 불용처리 승인 여부를 검토
 - * 단순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훈련시설·장비 불용처리 불가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및 동 사업으로 이관된 사업(국가 인적자원개발권소사업 등)에서 지원받은 훈련시설·장비에 대한 불용처리 시, 본 매뉴얼에 의거하여 수행

4

세부 운영계획

< 업무처리 절차(요약) >

① **훈련시설·장비 불용처리 요청** (공동훈련센터→지역인자위)

-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시설·장비의 불용처리 사유 발생 확인 후, 기관 내부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불용처리 요청 여부 결정
- 공동훈련센터는 불용처리 요청서[별첨1]와 기지원 시설장비목록을 작성하여 지역인자위에 공문 제출(기관별 1부 제출)

② **전문가 사전검토 및 심의·의결** (지역인자위)

- 지역인자위는 공동훈련센터가 불용처리를 요청한 훈련시설·장비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검토(훈련시설·장비 실사 포함) 및 사전검토 의견서[별첨2] 작성을 요청
 - * 전문가는 분야별로 최소 1명 위촉해야 함(내용전문가, 회계사 등)
 - * 훈련시설·장비 실사 등 기관 방문 시, 공단 지부·지사 담당자 동행 가능
- 전문가 사전검토를 통해 해당 훈련시설·장비에 대한 명확한 불용처리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역인자위는 본위원회 심의·의결 진행
- 전문가 검토를 통해 훈련시설·장비에 대한 명확한 불용처리 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역인자위는 검토결과를 공동훈련센터에 송부
 - 불용처리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해당 훈련시설·장비를 교육훈련에 지속 활용해야 함

③ **훈련시설·장비 불용처리 승인 요청** [지역인자위→공단 본부]

- 지역인자위는 전문가 검토 결과를 근거로 지역인자위 본 위원회 심의·의결 후, 아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본부에 해당 훈련 시설·장비의 불용처리에 대한 승인 요청

* < 훈련시설·장비 불용처리 승인 요청 관련 증빙자료 >	
① 공동훈련센터 불용처리 요청서 및 공문	② 전문가 사전검토 의견서
③ 지역인자위 본위원회 심의·의결 공문	④ 기지원 훈련시설·장비 목록
⑤ 불용처리 관련 기타 증빙서류	-

* 공단 본부는 회계정산(1~2월) 시 훈련시설·장비 불용처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10월말까지 불용처리 승인요청 요망**

- 훈련장비 고장 등 훈련시설·장비 불용처리 사유가 공동훈련센터 또는 훈련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기관 자체구매 계획(시설보수, 장비구매 등)을 함께 제출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제61조(훈련시설 및 장비의 내용연수 등)

③ ~ 다만, 장비 고장 등이 공동훈련센터 또는 훈련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승인받은 훈련과정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 비용으로 해당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훈련시설·장비 점검 및 불용사유 검토** [공단 본부]

- 공단 본부는 회계정산 시에 회계정산 수행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지역인자위로부터 불용처리를 요청받은 훈련시설·장비를 점검하고, 불용사유(고장·파손·마모 등)를 확인하여 불용 승인 여부를 결정
- 관련 분야 전문가(내용전문가, 회계사 등)는 내용전문가 의견서[별첨3]를 작성하여 공단 본부에 제출하고, 부서장은 이를 확인하여 불용처리 승인 여부를 결정

5] 훈련시설·장비 불용 승인 여부 알림 (공단 본부→지역인자위)

- 공단 본부는 회계정산이 종료된 후 훈련시설·장비 불용처리 승인 여부를 지역인자위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지역인자위는 해당 내용을 공동훈련센터에 전달

6] 훈련시설·장비 불용 처리 결과 보고 (공동훈련센터→공단 본부, 지역인자위)

- 공동훈련센터에서는 불용처리 승인된 훈련시설·장비에 대해 자체 처리(파기 등) 후 그 결과를 불용 처리 결과 보고서[별첨4]에 기입하여 공단 본부와 지역인자위로 보고
- 공동훈련센터는 불용처리가 승인된 훈련시설·장비에 대한 사항을 훈련시설·장비관리대장과 HRD-Net 훈련장비 현황에 반영·현행화

5 행정사항

- 공동훈련센터 : 불용처리 요청전, 훈련시설·장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명백한 불용사유를 확인한 후에 지역인자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 불용처리 절차 진행
- 지역 인자위 : 공동훈련센터별 훈련시설·장비 불용처리계획을 사전 취합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내용전문가 수당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신청

[별첨 목록]

[별첨1] 훈련시설·장비 불용처리 요청서 (공동훈련센터)

[별첨2] 전문가 사전 검토 의견서

[별첨3] 훈련시설·장비 불용처리 승인 요청서 (지역인자위)

[별첨4] 훈련시설·장비 불용처리 결과 보고서 (공동훈련센터)

별첨1

훈련시설·장비 불용처리 요청서 (공동훈련센터용)

□ 공동훈련센터명 : _____

□ 요청일자 : 20 . . .

항 목	지원 연도	훈련시설·장비명	수량	취득연월	취득가액 (정부지원금)	잔존 가액	설치 장소	불용 사유
훈련시설, 훈련장비	2015		1	2015.08	8,000,000 (6,400,000)	0		1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제61조 - 불용처리 가능 사유 >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가 도래한 훈련시설로 교육훈련 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에 따라 내용연수가 도래한 훈련장비로 교육 훈련 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3. 고장, 파손 등에 따른 수리비용이 해당 훈련시설 및 장비의 현재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4. 활용실적이 많아 장비가 마모되거나 기술변화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5. 제4항에 따른 훈련시설의 대체로 기존 지원 장비에 대한 사용이 불가한 경우(훈련장비만 해당)

20 . . .

공동훈련센터 대표 :

(인)

별첨2
전문가 사전 검토 의견서
☐ 공동훈련센터명 : _____

☐ 검토일자 : 20 . . .

항 목	지원연도	훈련시설·장비명	수량	취득가액 (정부지원금)	잔존가액	불용사유	검토의견
훈련시설, 훈련장비	2015	훈련시설·장비 명칭 및 모델명 기입	1	8,000,000 (6,400,000)	0	1	훈련시설·장비의 고장파손·마모 여부 등 해당 장비를 교육훈련에 활용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검토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 소 속 : _____

☐ 성 명 : _____ (인)

☐ 소 속 : _____

☐ 성 명 : _____ (인)

별첨3

훈련시설·장비 불용처리 승인 요청서 [지역인자위용]

☐ 지역인자위명 : _____

☐ 요청일자 : 20 . . .

항 목	지원 연도	훈련시설·장비명	수량	취득연월	취득가액 (정부지원금)	잔존 가액	설치 장소	불용 사유
훈련시설, 훈련장비	2015		1	2015.08	8,000,000 (6,400,000)	0		1

※ 내용전문가 의견서 별도 첨부

20 . .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 :

(인)

별첨4
훈련시설·장비 불용처리 결과 보고서 (공동훈련센터용)
☐ 공동훈련센터명 : _____

☐ 보고일자 : 20 . . .

지원연도	훈련시설·장비명	수량	취득가액 (정부지원금)	잔존 가액	불용 시설·장비 처리 결과	시설·장비대장 현행화 여부
2015		1	8,000,000 (6,400,000)	0	파기 처리	○

20 . . .

공동훈련센터 대표 :

(인)